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38

발의연월일: 2021. 8. 31.

발 의 자:유의동・金炳旭・김성원

김예지 • 박대수 • 배현진

윤주경 • 이주환 • 조명희

추경호 · 홍문표 · 황보승희

(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포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 주기가 5년으로 너무 길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의적절한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종합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2년에 실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건복지부장관은 <u>5년</u> 마다 아동	<u>2년</u>
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	
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	
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	
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